

## 최근 독일 총선의 주요 논점인 단일세율(Flat Rate) 개혁안

김 유 찬,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세무학과 교수

2005년 10월

---

지난 9월 중순에 있었던 독일의 조기 총선에서 주요 논점으로 단일세율안이 부각되었다. 이는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키르히호프 교수가 주도한 것으로, 그는 2001년 독일 소득세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세계개혁안은 소득세의 모든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증가한 조세수입은 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어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또 가족과 자녀 양육을 위한 최저생계비는 소득세에서 더 큰 폭으로 공제하여 가족형성에 더 우호적인 조세정책을 제시한다. 독일 사회에서는 키르히호프 교수의 제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으로 이 개혁안에 대하여, 혹은 최소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정의 삭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 세계개혁안에 대한 독일 학계의 기대는 이것을 통하여 조세제도가 경제 주체의 활동에 중립적으로 작용하면, 이로 인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것과 세율이 낮아지면 탈세가 줄지 않겠느냐 것이다. 물론 이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종합해 보면, 독일의 단일세율안은 조세의 형평성 문제와 적정 세수확보의 문제, 그리고 투자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우려 때문에 세계개혁에서 대안으로 삼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편집인: 페터 가이,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윤니동 98-5 삼환 빌딩 1101호 ☎ 110-742

Tel: (02) 745-2648/9, Fax: (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 1. 단일세율안의 제안

2005년 9월 18일에 치러진 독일의 조기총선에서 기민/기사련(CDU/CSU) 연합의 수상후보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재는 재무부 장관 후보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하이텔베르그 대학 법학부의 파울 키르히호프(Paul Kirchhof) 교수를 지명하면서 선거전에서 조세개혁을 핵심 주제의 하나로 선택하였다. 키르히호프 교수는 수 년전부터 경제학자, 세무 자문가, 세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조세전문가 그룹을 이끌며 독일의 소득세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개혁안을 2001년 '칼스루헤 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2002년 당시 칼스루헤 안은 소득세의 누진구조를 대폭 완화하여 15%의 최저세율에서 시작하여 35%의 최고세율로 끝나는 세율구조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안을 더 발전시켜 기업과 개인에 대한 25%의 단일세율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소득세 최고세율 40%와 비교하면 이 단일세율안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나 키르히호프 교수는 동 조세개혁안에서 세율 인하와 병행하여 자가주택 구입보조금, 통근비용 공제 등 418가지에 달하는 소득세법 상의 여러 가지 조세혜택을 삭제하여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독일 총선의 결과는 어느 정당도 승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백중지세를 보여주었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은 단일세율안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내세운 기민/기사련 연합에게 감표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민/기사련 연합이 향후의 연정협

상에서 주도권을 잡고 연방수상의 자리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단일세율안이 현재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며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단일세율안은 향후의 조세정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이며 따라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단일세율안의 배경

### 가. 경제의 글로벌화와 조세 경쟁의 추세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서 자본 이동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면서 자본은 수익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글로벌화 시대에는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뿐만 아니라 노동력, 특히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도 국제적으로 동질화되면서 인력의 국제적 이동도 과거보다 훨씬 활발해진다. 결국 자본과 노동력이라는 근본적인 과세 원천이 국가들 간 과세 부담의 차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낮은 세율을 찾아 빠르게 국경을 넘나들므로 개별국가들은 이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별 국가들 간의 세계 경쟁은 EU 회원국들 간의 법인세 및 소득세 분야의 최고세율 인하 추세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 이동이 자유로운 세원에 대해 높은 한계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 나. OECD 회원국들의 소득세 제도 개혁안 중 단일세율안의 위치

자본과 이동이 자유로운 인력에 대한 고율의 과세가 어려워지면서 개별국가들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본의 해외유출을 우려하여 우선 자본과 관련된 법인세율과 이자소득세율을 그리고 점차 고급인력과 관련된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낮추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이상적인 소득세 체계라고 생각하던 누진적 종합소득과세의 체계가 흔들리게 되었다. 소득세야말로 전체 조세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목이므로 이는 많은 나라에서 조세체계 전체의 틀을 바꾸는 일이 되었다.

종합소득세의 대안으로 가장 먼저 부각되어 채택된 것은 현재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본과 근로소득의 분리과세(Dual Income Tax)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동성이 강한 이자 등과 같은 자본소득에 대하여는 저율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이동성이 약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누진율 구조를 가진 상대적으로 고율의 소득세 체계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과연 향후에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지만 미국에서는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소득세 개혁안이 제시되고 있다. 즉, 자본의 이동성 때문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복잡한 미국의 소득세 제도에 비추어 소득세를 아주 폐지하거나 정부의 재정을 전적으로 소비세에 의존할 정도로 소비세를 강화하여 소득세의 의미를 약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도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좋은 반응을 받았으나 결코 실현된 적이 없는 칼도르(Kaldor)라는 학자의 지출세(Expenditure

Tax)와 같은 맥락의 제안이다. 소비에 대해서는 창출된 소득 중 소비 부분만 과세하고 저축 부분은 비과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소비를 억제하고 사회의 자본축적을 장려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실현되지 않은 것은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분배의 역진성 때문이라고 보인다. 즉 고소득층은 소득 중 작은 부분만 소비하므로 세 부담이 가벼워지게 되고, 역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기존의 누진적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 번째의 대안이 단일세율 개혁안이다. 이 개혁안은 키르히호프 교수가 제안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제안, 실현된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단일세안을 도입하지 얼마되지 않아 누진세율구조를 재도입하였다. 세율구조가 단일세로 되어 있어도 기초공제의 수준이나 기타의 다른 요소때문에 미국에서 실현된 단일세안과 이번에 독일에서 제안된 단일세안의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 독일의 단일세율안은 상당한 수준의 기초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단일세율안이지만 어느 정도 간접적인 누진율 구조를 가지는 제도이다. 여하튼 단일세안은, 미국의 소비세를 지향하는 근본적 조세개혁안이나 북구국가들의 자본과 근로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에 비하면, 전통적 의미의 누진적 종합소득세에 상대적으로 가장 근접하는 개혁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 3. 단일세율안의 주요 내용

#### 가. 조세감면의 대폭적 폐지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와 세율인하

키르히호프 교수의 '칼스루헤 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조세감면 혜택을 기본적으로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정부가 비중립적으로 개입하는 통로로 파악한다. 이러한 조세혜택을 세법에서 모두 제거하면 경제전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과세기반이 크게 향상되면서 정부의 조세수입이 줄지 않으면서 세율을 낮게 할 수 있는 큰 여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키르히호프 교수는 여러 차례 납세자들의 사유 재산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소득 및 재산상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야기될 정도로 심하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상기시키며, 칼스루헤 안은 과도한 과세 금지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같이 실현하는 방안으로, 과세기반에서 제외하는 모든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증가한 조세수입은 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춤으로서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독일의 산업입지를 상대적으로 강화시켜주며, 아울러 개별 경제주체에게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경제의 효율성이 전체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개별종류의 조세혜택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면, 향후에는 이를 조세혜택으로서가 아니라 예산확정이라는 의회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칼스루헤 안은 소득세법 제3조의 69개 항목과 3b조에서 규정된 수많은 비과세 및 조세혜택 항목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당연하게 인정받는 감가상각비용 중에서도 정율법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비

하여 그 자체에 조세혜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정율법의 감가상각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안은 삭제하려는 조세혜택 중 특정한 저축 이자에 대한 비과세도 당연히 포함시키고 있으나 예외로 개인이 지출(혹은 저축)하는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를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 나. 소득종류의 단일화

칼스루헤 안은 현재의 소득세법에서 구분하는 7가지 소득의 종류를 단일화한다. 이를 통해 소득의 구별과 함께 발생하던 세 부담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의 종류를 나열하는 규정을 없애면서 하나의 과세대상을 상태적, 행위적 그리고 결과적 사실로만 규정한다. 따라서 과세대상은 모두 수입을 위해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한 취업활동(행위적 사실)의 소득일 뿐이다. 또 시장과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예를 들어 사업체나 근로자의 직장과 같은, 취업활동의 기반(상태적 사실)을 통해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과세된다(결과적 사실).

영업활동과 기타 소득창출활동의 구분이 없다면 영업세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독일 기초지방자치단체(Gemeinde)의 가장 큰 세수입인 영업세가 사라지는 경우, 칼스루헤 안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구역 내 주민에 대한 소득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분에 대하여 징수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 최저생계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자녀공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은 납세의무자와 그

가족이 기초생활비로 써야 하는 부분이므로 기초 공제로서 과세에서 제외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수준은 일반적인 경제상황과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데 칼스루헤 안에서는 1인당 연간 10,000 유로 정도를 최저 생계비로 보고 기초공제를 하고 있다. 또 개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추가 생계비는 조세분야에서 반영되는 것보다 예산지출 면에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기초공제는 독일 내에 거주하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에게만 허용해야 하며, 해외에 거주하며 독일의 원천과세 대상인 제한적 납세의무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 최저생계비는 납세의무자의 필요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포함된다. 특히 부모는 자녀양육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출 필요성도 최저생계비에서 인정된다. 칼스루헤 안은 자녀 1인당 8,000 유로의 기초소득공제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정함으로써 4인 가족의 경우 총 36,000 유로를 공제해 준다.

#### 라. 법적 형태에 대한 중립적 과세

현재는 법적 형태별로 기업에 대한 과세가 구별된다. 개인기업의 소득은 개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고, 법인에 대한 과세는 별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로 과세한 다음 배당에 대하여는 주주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구별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법적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의 차이를 야기한다. 칼스루헤 안은 모든 자연인이나 법인을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법인체에서 받는 배당은 이미 과세된 것이므로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과세하지 않는 것을 제안한다.

## 4. 독일 학계 및 사회의 반응

### 가. 전반적인 평가

독일의 기업계는 키르히호프 교수의 칼스루헤 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으로 동 개혁안에 대하여, 혹은 최소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세 부담이 같은 수준에 머무르더라도 조세제도가 단순해진다는 것, 그 자체가 기업에게는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이라고 기업계의 한 인사는 말하고 있다. 함브르그 경제연구소(HWWA) 소장인 슈트라우하르(Straubhaar) 교수는 이 세제 개혁안을 극찬하며, 이 세제개혁을 통하여 정부는 본연의 과제에 집중하고 민간의 성장 동력을 풀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EU의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독일의 위치는 이 안이 실현된다면 최고 높은 세율수준의 그룹에서 하루아침에 중간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와 같은 변화는 동 세계개혁안이 수반할 다른 측면(예를 들어, 조세감면의 삭제, 감가상각 규정의 변화 등)으로 인한 효과를 무시하고 보면 기업이나 개인 납세자 모두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규정들의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세제개혁안이 실현되면 소득분배에 역진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며, 또 정부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 나. 투자 및 경기에 미치는 효과

은행의 한 경제 분석가는 자녀를 둔 가족에게

소득공제를 큰 폭으로 허용하는 것이 경기회복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족은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고 보는 투자재 수요에 대해 키르히호프 교수의 제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기 어려우나, 그가 제안하는 정율법적인 감가상각을 허용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는 설비투자가 많은 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투자에 해롭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는 슈뢰더 정부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대신에 감가상각 규정을 어렵게 하여 세수를 충당한 것이 투자에 전혀 이롭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명확해 진다.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법인의 이익에 모두 적용되는 것에 비하여 감가상각규정은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영향을 주므로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손실을 감가상각규정을 죄어서 충당한다면 결국 설비투자를 적게 하는 기업이 유리하고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설비투자가 경제 전체에 주는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동 세계개혁안은 결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와는 반대의 결과에 도달할 수도 있다.

#### 다. 세수효과에 대한 평가

칼스루헤 안이 정부 재정에 어떻게 작용할 지는 불확실하다. 조세감면을 줄이고 세율을 낮추는 것이 세수에서 어떤 숫자로 나타날 지 모르는 것은 이 안 자체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기업에 대한 과세 분야에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 최종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 단일세율안이 기업과 개인납세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세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정부의 재정적자의 폭을 더 확대하는 것이므로 독일 정부의 현재 입장에서 지향하는 방향도 아닐 것이다.

#### 라. 소득분배의 문제

칼스루헤 안이 독일 사회의 여러 계층에 미치는 세수경감효과 및 소득분배를 생각해 보자.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이 안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의 자녀 1인당 소득공제액이나 자녀보조금(자녀 1인당 연 1,848 유로)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인 8,000 유로를 소득공제 받는다. 반면에 이 안에 따라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공제가 삭제되면 소액저축자에게 불리하게 된다. 또 소액투자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삭제되면 이 또한 소액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고소득계층은 우선 세율면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고소득계층 중 현재 여러 가지의 조세혜택을 잘 이용하던 납세의무자의 경우 이 혜택이 사라지면서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세계개혁안이 기업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법인세율은 현재의 25%가 그대로 유지되어도 동 개혁안에 따라 영업세가 없어지면 세율면에서는 기업에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여러 가지 조세감면이 삭제되고 감가상각규정이 엄격해지면 최종 결과가 기업에게 세금부담을 줄여주게 될지 혹은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킬의 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인 테니스 스노우어

(Dennis Snower) 교수는 칼스루헤 안이 실현된다면 기초소득공제를 소득상황을 고려한 보조금으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극빈층의 경우 공제될 소득이 부족하다면 기초소득공제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극빈층에 대한 보조금 없이는 적절한 수준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소득 계층별로 보면, 단일세율안은 4인 가족에 대한 36,000 유로의 인적공제를 함으로서 소득세로서 갖추어야 특징인 누진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 수준의 인적공제가 허용되는 경우, 독일의 저소득층은 현재보다 과세상 유리해진다. 그러나 단일세율안이 실현되는 경우 중간계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조세형평성은 더 악화될 것이다.

#### 마. 과세소득의 정의

일반적으로 공정한 과세는 어느 나라에서나 개인의 경제 능력에 입각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Leistungsfähigkeitsprinzip)을 취한다. 칼스루헤 안을 보면, 공정한 과세는 시장소득을 과세하는 것이라는 어느 나라에서도 택하지 않은 과세소득을 제한하고 있다. 이 안은 나아가 지속적으로 취득하는 시장소득이 과세대상소득이라는 더 제한적 입장을 취하는데 시장에 일회성 소득(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차익)도 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또 칼스루헤 안은 시장소득이 아닌 정부의 보조금도 과세소득에 포함시킴으로써 시장소득이론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정당화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안이 지향하는 과세소득의 범주는 전체적으로 적절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 바. 세계간편화와 징수비용의 문제

이 개혁안은 현 소득세법의 78개 조를 단지 21개의 조로 간편화했다. 또 그 중 20개 조는 단지 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세법의 적용에서 납세자나 세무공무원이 힘들어하는 것은 그 세법이 길고 체계가 없을 경우뿐만 아니라 세법이 짧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세법이 추상적인 경우 그 하위 법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야 하므로 결국 관료들의 재량권에 권한이 위임되면서 세법과 하위법령을 통틀어서는 결국 간편화의 목표도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하여 더 높은 징수비용을 초래하는 결과가 생기게 될 것이다.

#### 사. 연금에 대한 과세 취급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향후 연금을 받을 때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는 소득이 애초에 발생했을 때 과세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므로 연금가입자에게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 만큼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과 동일하며 이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예외없이 과세한다는 칼스루헤 안의 원칙에 모순된다.

### 5. 맺으며

독일 사회가 칼스루헤 안에 갖는 기대는 이 개혁안을 통하여 조세제도가 경제 주체의 활동에 중립적으로 작용하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세율이 낮아지면 탈세가 줄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탈세이론에서

불 때 세율이 낮으면 탈세로 인한 기대효용이 감소하므로 탈세는 줄어든다. 물론 이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독일의 단일세율안은 조세의 형평성 문제와 적정 세수확보의 문제, 그리고 투자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우려 때문에 세계개혁에서 대안으로 삼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05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on Office